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7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 박덕흠 · 고동진 · 구자근

이종배 · 김예지 · 강승규

조지연 • 박성민 • 김상욱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참전명예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수준에 그쳐 대다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63 개 지자체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 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6 조의2 등).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우자"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호"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로"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로"를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

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

제7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가"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참전유공자의"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이 법 시행 후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배우자"란 참전유공자의 배		
	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u>참전유공</u>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u>참전유공</u>		
<u>자</u> 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u>자 또는 그 배우자</u>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참</u>	<u>참</u>		
<u>전유공자</u> 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u>.</u>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③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u>하나</u> 의 요	<u>하나 또는 같은</u>		

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 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u>참전</u> 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u>국</u>
 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u>보훈보상대</u> 상자로 등록된 사람

3.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생략)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

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u>조 제3호</u>
<u>참전유공자 또</u>
는 그 배우자
1
2
보훈보상대
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
<u> 경자 도는 그 배구자도</u>
0 (원체의 가ዕ)
3. (현행과 같음) ④
4
<u>참전유</u>
공자 또는 그 배우자
<u>참</u>
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⑤ (현행과 같음)
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참전유공자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 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 다.

- 1. ~ 7.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조 (생 략)
 -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 으로 지급하며, 그 <u>지급액 등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참전명 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 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u>또는 그 배우자</u>
<u>.</u>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에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급
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u>기</u> 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⑧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
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6조의2(권리의 보호) ①
다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

② • ③ (생 략)

제7조(의료지원) ① <u>참전유공자가</u> 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 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 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 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 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략)

우자에게 잠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7조(의료지원) ① <u>참전유공자</u>
또는 그 배우자가
② <u>참</u>
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③ (현행과 같음)

- 1. 제5조에 따른 <u>참전유공자</u>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 제5조의2에 따른 <u>참전유공자</u> 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3. ~ 8. (생략)
- ② ~ ④ (생 략)

제39조의2(자료의 저	공	요청	등)		
①					
, 1 ====================================	1 -1	ዕ 코리	rr		
1 <u>7</u>					
<u>는 그 배우자</u>					
2	ラ	L 7-1 O _	고기		
또는 그 배우자-					
3. ~ 8. (현행과 7	가스)			
② ~ ④ (현행과 같음)					